

#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활용전략 및 모델 구축에 관한 실증연구

A Study on the Building of Korea-USA FTA Business Model for Food Industries in Korea

김태인(Tae-In Kim)

강원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결론 및 시사점 |
| II. 한-미 식품산업 교역현황        | 참고문헌         |
| III. 식품산업 한-미 FTA 컨설팅 사례 | Abstract     |
| IV. FTA 비즈니스 모델 제안       |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 대미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에 알맞은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은 국내산 주원료를 가공하여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완전생산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3류 어류, 04류 유제품, 06류 화훼, 07류 채소, 08류 과일, 11류 쌀가루, 12류 인삼, 13류 인삼엑스, 19류 조제식료품, 20류 김치, 조미김, 주스류, 21류 가공유제품 등이 해당된다.

둘째,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은 주원료를 제3국(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관세인하(원가절감) 혜택을 받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공한 한 후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세번변경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9류 견고추가루, 11류 밀가루, 15류 참기름, 21류 인스턴트커피, 16류 가공어류 및 가공것갈, 02류 소갈비, 16류 육류조제품, 16류 삼계탕, 35류 젤라틴, 19류 면류, 21류 소스류, 22류 주류, 17류 및 18류 과자류 등이 해당된다.

**주제어** : 식품산업, 한-미 FTA, 비즈니스 모델

##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콜롬비아 등 46개국과 FTA를 발효하였으며, 터키는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다. 또한 현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GCC, 멕시코, 한중일 등 12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FTA 국가와의 전체 누적교역량은 36%까지 증가되었다. 대미 수출대비 FTA 활용률은 66.1%로 나타났으며 기준세율이 무관세인 품목을 제외한 농림수산물품의 2012년 대미 FTA 수출 활용률은 73.9%로 나타났다.

한-미 FTA의 경우, 기존연구에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산업은 모두 비교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2012년 미국으로의 식품 수출은 약 6억 달러, 약 6천억원 정도이며, 미국으로의 전체 수출의 약 1% 정도의 금액이지만, 단일국가로는 일본,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금액은 200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2년에 15%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한류를 통해서 미국에 한국음식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절대로 작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김태인(2013)은 우리나라 전체의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지역별로 품목별로 실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산업별 FTA 모델을 구축하여 해당산업의 표준화된 FTA 활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이를 토대로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에 적합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우리나라 대미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에 알맞은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II장에서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대미 수출 식품산업의 주요 수출품목군을 도출한다. 제III장에서는 각각의 주요수출 품목군의 대표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FTA 컨설팅(각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판정, FTA 활용전략, 인증수출자제도 활용 등)을 수행한다. 전문가를 활용한 FTA 컨설팅을 실제 수행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 해당 업체의 FTA 활용전략을 실제 검토하였고, 제IV장에서는 해당 주요 품목군의 FTA 활용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및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와 무역협회 등에게 FTA 지원과 지원 방향을 제공하고, 실제 수출업체들은 품목별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자신들의 수출품목에 적용시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들의 실제 인터뷰를 통해 강원도 비교우위 산업별로 적합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및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문헌연구방법과 사

1)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2011.8.5), 연구기관보고서

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식품산업에 한정하여 주로 관세율표 HS 제0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비교우의 품목군을 선정하였다.

첫째, 농산물 및 임산물은 06류, 07류, 08류, 09류, 11류, 12류, 13류, 15류, 20류, 21류 24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수산물은 03류, 12류, 16류, 20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축산물은 01류, 02류, 04류, 15류, 16류, 19류, 21류, 22류, 35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넷째, 가공식품은 17류, 18류, 19류, 20류, 21류, 22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FTA 컨설팅은 이들 제품의 대표 수출업체를 선정하여 방문 컨설팅 하였다.<sup>2)</sup>

## II. 한-미 식품산업 교역현황

### 1. 미국 수출동향

2012년 HS코드 01류부터 24류까지 식품산업의 대미 수출동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 2012년 식품산업 대미 수출금액(천불, 톤)

기간	품목명	HS코드	수출중량	수출금액
2012	기타조제품	21	26,902	121,554
	곡물조제품	19	38,009	113,964
	어류	3	16,301	100,141
	음료·주류	22	79,853	71,456
	담배	24	15,714	52,669
	과일	8	9,362	31,534
	동물성 가공품	16	5,052	27,761
	한약재·대두	12	2,219	23,539
	식물조제품	20	4,696	14,296
	채소	7	4,490	9,678
	식물성 액즙	13	356	8,149
	제분	11	5,693	5,950

2) 젓갈 및 반찬류 수출업체 2개사, 조미김 수출업체 1개사, 음료 수출업체 1개사, 마죽 및 미숫가루 수출업체 1개사 등

기간	품목명	HS코드	수출중량	수출금액
	낙농품	4	4,624	5,017
	설탕류	17	1,807	4,686
	커피·차	9	621	3,405
	유지	15	369	2,179
	나무와 식물	6	171	2,059
	코코아	18	249	1,045
	산동물	1	8	358
	곡물	10	159	333
	조제사료	23	106	276
	기타 동물성 생산품	5	40	102
	육류	2	8	30
총계	합 계		216,809	600,181

전체 식품산업의 대미 수출액은 약 6억달러를 기록했다. 가공식품이 속한 기타 조제품의 수출이 가장 많았고, 곡물조제품, 어류, 음료 및 주류, 담배, 과일, 동물성 가공품, 한약재 및 대두, 식물조제품, 채소, 식물성 액즙, 제분, 낙농품의 순서로 수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2〉 2012년 식품산업 부류별 대미 수출실적

구분	2011년		2012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94,290	599,814	217,957	663,961
신선	25,705	76,770	23,588	85,768
-채소류	3,639	14,425	2,961	18,549
-김치	794	2,794	1,047	3,873
-인삼	510	11,143	543	11,748
-화훼류	146	1,932	169	1,835
-과실류	16,375	34,546	14,569	36,598
-버섯류	3,018	5,991	3,434	6,475
-돼지고기	0	0	4	14
-가금육류	0	0	0	0
-산림부산물	1,223	5,939	861	6,676
가공	139,464	342,178	164,828	387,297

구분	2011년		2012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면류	19,478	50,661	22,225	56,309
-소스류	14,408	30,369	14,372	31,303
-주류	16,680	21,541	15,449	19,818
-과자류	10,739	45,042	11,306	46,772
-연초류	1,487	29,378	2,128	38,963
-유제품	4,173	4,368	4,624	5,017
-목재류	4,625	4,715	5,753	9,721
수산	29,121	180,866	29,541	190,896
-어류	10,443	78,539	9,123	83,865
-연체동물	8,961	41,385	10,785	28,845
-해조류	6,798	48,552	6,459	60,712
-갑각류	857	6,683	1,030	10,657
-기타	2,062	5,707	2,144	6,817

위 표는 부류별로 2012년 대미 수출실적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첫째, 채소류는 전년 대비 28.6% 증가한 18.5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다. 작황부진에 따라 주 수출품목인 무가 감소한 가운데, 수출비중이 높은 채소종자 59.7%(7.8백만불)와 기타채소 22.6%(6.9백만불)의 수출이 증가되었다.

둘째, 김치류는 전년 대비 38.6% 증가한 3.9백만불 수출을 기록했다. 미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과 배추가격 폭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증가집, 농협 등 주 수출업체의 현지마켓(Costco 등)입점과 공격적 마케팅으로 수요를 확대하면서 수출증가하였다. 특히 한미 FTA 발효로 김치관세가 철폐된 만큼 현지 상품과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했으며 현지화한제품들이 시장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끌어내며 전년대비 물량, 금액이 모두 30% 이상 증가하였다.

셋째, 인삼류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11.7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다. 백삼제품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면역력 증진에 좋아 선물용으로 선호되는 홍삼제품 수요가 증가하였고, 본삼 보다는 상대적으로 복용이 쉽고 가격이 싼 홍삼조제품(3.4백만불, 25.1%) 및 인삼음료(1.1백만불, 35.6%) 신제품 출시와 공격적 마케팅으로 최대실적을 낸 2011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넷째, 화훼류는 전년대비 5.0% 감소한 1.8백만불 수출을 기록했다. 주 수출품목인 선인장은 수출이 정상화 되면서 전년대비 34.2% 증가(1.1백만불)한 반면, 난류는 경쟁국인 대만산

대비 가격·품질경쟁력 저하로 전년대비 28.3% 감소(0.8백만불) 하였고, 2011년 시험 수출되었던 장미 수출이 중단되면서 화훼류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다섯째, 과일류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36.6백만불 수출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국내 작황이 부진한 가운데 대미 주 수출품목인 배는 2011년산의 2012년 초 수출 급증으로 2012년산의 연말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10.4%(26.3백만불) 증가하였다. 2011년 시험 수출된 감귤은 생산농가 관리 등으로 전년대비 63.1% 증가한 1.0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사과는 '10년말 수입검역이 완화되면서 '11년 시험수출 되었으나, 내수가격 급등으로 전년대비 60.9% 감소한 0.1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유자(차)는 Gourmet Food로 수입업체의 마케팅확대에 따른 인지도 제고, 현지 및 아시안 마켓(특히 중국계) 마케팅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요부진으로 전년대비 5.9% 감소한 1.6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신선포도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작황부진에 따른 품질저하 및 가격상승으로 현지산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전년대비 10.3% 감소한 0.5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다.

여섯째, 버섯류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6.5백만불 수출을 기록했다. 팽이버섯은 현지 미국산 및 캐나다산들과의 가격과 품질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좋은 품질과 수입업체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전년대비 19.5% 증가한 4.9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중국산 새송이의 품질 문제로 한국산 새송이의 시장확대를 기대했으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캐나다산 새송이 버섯의 가격경쟁력과 품질 강화로 새송이 버섯은 1.2백만불로 19.2% 감소하였다. 버섯류의 경우 관세가 균등철폐되는 품목으로 가시적인 FTA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주류 마켓들이 새송이 버섯을 진열 판매 하는 실정으로 확대되는 시장 규모에 따라 대미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일곱째 산림부산물은 전년대비 12.4% 증가한 6.7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주 수출품목인 밤은 수출량 감소( $\Delta$ 26.8%)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전년대비 2.9% 상승한 2.4백만불을 수출하였고, 임산버섯의 경우 연말 수입항 파업에 따른 통관지연과 주 수출품목인 표고버섯 수출 감소( $\Delta$ 18.2%)로 전년대비 31.3% 감소한 0.2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임산감은 꽃감의 현지마켓(Trader Joe's)입점으로 전년대비 1,351.0% 증가한 0.8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여덟째, 가공식품은 전년대비 13.2 % 증가한 387.3백만불 수출을 기록했다. 면류는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냉면 수출이 12.4%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주 수출품목 대부분이 증가하였다. 라면은 농심의 벤조피렌 검출('12.10)로 수출이 주춤하다가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강화로 7.8% 증가하였으며, 관세가 철폐된 국수(6.2%), 당면(42.7%)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1.2% 증가한 56.3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커피류는 인스턴트커피 소비증가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커피조제품 수출이 9.0%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9.1% 증가한 7.5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소스류는 전체 3.1% 소폭 증가한 31.3백만불로 주 수출품목 기타소스가 전년대비 3.7% 감소 및 된장이 9.6% 감소하였으나, 고추장이 연말 농약검출 문제로 주춤하다가 8월말 가격인상에 따른 조기물량 확보 등으로 24.9% 증가하였고, 간장은 수입업체의 마케팅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11.1% 증가하였다.

주류는 맥주 16.0%(3.0백만불), 막걸리 0.2%(1.9백만불), 소주 5.0% (9.0백만불)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규모가 큰 알코올성합성조제품이 44.1% 급감(3.4백만불)하여 전년대비 8.0% 감소한 19.8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음료는 전년대비 49.1% 증가한 50.3백만불로 주요 수출상품인 알로에 음료 수출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간편히 마실 수 있는 홍초류부터 과일주스, 에너지드링크 등이 수출 상승을 주도함과 동시에 미국 내 탄산음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어 건강음료로 인식되는 한국산 음료에 대한 수요도 자연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아홉 번째, 수산식품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191.0백만불 수출을 기록했다. 수산식품은 굴 수출중단에 따른 연체동물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미국 수출 수산식품 최대 부류들인 어류, 해조류, 갑각류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였다. 어류는 작황부진으로 명태, 꽁치의 수출감소와 통관이 까다로웠던 멸치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기, 고등어, 갈치, 조기, 넙치, 참치, 기타어류 등 대부분의 신선·건조 품목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6.8% 증가한 83.9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연체동물은 노로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굴 수출중단('12.5월)으로 수출이 73.7% 감소(5.6백만불)하여 오징어 27.0% 증가(20.1백만불)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0.3% 감소한 28.8백만불을 수출하였고, 해조류는 김이 현지 주류시장에서 건강식품인 스낵김으로 인지도를 높이면서 전년대비 32.6% 증가하여 최초 5천만불(51.3백만불)을 돌파함으로써 미역(△3.7%, 5.8백만불), 다시마(△18.9%, 1.3백만불)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5.0% 증가한 60.7백만불을 수출하였다. 관세 철폐로 한국산 스시김/조미김의 경우는 가격경쟁력이 강화됐으나 한국내 원초 공급의 어려움으로 대미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갑각류는 주 수출품목인 게살 수출이 91.8% 급증한 7.3백만불을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59.5% 급증한 10.7백만불을 수출하였다.

## 2. 미국 수입동향

전체 식품산업의 대미 수입액은 약 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곡물의 수입이 가장 많았



고, 소고기를 비롯한 육류, 대두, 과일, 가공식품, 조제사료, 식물가공품, 낙농품, 어류, 곡물가공품, 코코아, 음료 및 주류, 유지 등의 순서로 수입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2년 전체 대미 수입은 전년대비 12.9% 감소한 6,710.6백만불을 기록하였다. 곡류 및 두류는 각각 전년 대비 32.0% 감소한 1,750.3백만불과 4.6% 감소한 313.7백만불을 수입하였으며, 축산물은 소고기·돼지고기 등 전반적인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6.3% 감소한 1,410.6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과실류는 오렌지·버찌·포도·크렌베리·레몬 등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35.5% 증가한 512.6백만불을 수입하였다.

### Ⅲ. 식품산업 한-미 FTA 컨설팅 사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기관(2011)이 CGE 모형을 활용하여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농업 부분의 대미 수입은 연평균 4.2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 농업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산업은 동기간 대미 수입은 연평균 1,178만달러 증가할 것이며, 품목은 명태, 넙치, 아귀 등의 순서이다. 대미 수출은 연평균 78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품목은 다랑어와 굴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미 수입이 증가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미 수출 비교우위 품목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식품산업의 비교우위 품목을 선별한 후, FTA 컨설팅 활용을 통해 이들 품목의 FTA 수출 모델 개발하여 한-미 FTA 활용을 제고 시켜야 할 것이다.

#### 1. 비교우위 품목군 도출

2012년 대미 수출액 통계를 근거로 농산물 및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의 비교우위 품목군을 도출하였다.<sup>3)</sup>

2012년 대미 수출액 통계에 따르면, 농산물 및 임산물의 비교우위 품목군은 배, 인삼(홍삼 조제품, 인삼음료), 채소종자, 선인장, 팽이버섯, 단일과실조제품(기타 과실·견과류의 조제품), 김치, 고추, 밤, 유자차, 새송이버섯 등이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군으로 나타났다.

3) 농수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2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3.3, pp.53-126., pp.207-261.



2012년 대미 수출액 통계에 따르면 수산물의 비교우위 품목군은 김, 오징어, 참치, 넙치, 게살, 어류제품, 미역, 굴, 멸치, 고등어 등이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군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미 수출액 통계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비교우위 품목군은 음료(홍초류, 과일쥬스, 에너지드링크), 껌, 라면, 비스킷, 곡류조제품, 국수, 소주, 고추장, 커피조제품 등이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군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의 비교우위 품목군은 젤라틴, 발효유, 연유, 축산가공품 등이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군으로 나타났다.

## 2. 한-미 FTA 원산지 규정

한미 FTA 협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제6.6조 최소허용수준에 따르면,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장의 부속서인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1부 일반주해, 1. 나. 규정에 따르면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2부 품목별원산지규정(PSR)에 따르면, 농산물 및 임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대부분 2단위 변경기준이다.

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에서 제1류 내지 제24류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는 부속서 6-가의 가호 내지 차호와 부속서 6-가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가 결정되고 있는 상품과 다른 소호(6단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한 제6.6조의 최소허용수준이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제1류에서 제24류 제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이 대부분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고, 따라서 조정가치 10%미만의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나, 동 제품과 동일 소호의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될 경우는 최소허용기준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결국 제1류부터 제24류의 모든 제품의 주원료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완전생산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것과 같다. 즉, 부속서 6-나 제6.6조 최소허용기준의 예외에 해당되는 품목(03류 어류, 04류 유제품, 07류 채소, 11류 등 쌀제품, 20류 채소·과실 및 견과류 조제품, 15류 유지, 17류 당류, 18류 코코아 분말 등)은 주원료를 100% 다 국내산을 써야 하며, 제1류 내지 제24류에 분류된 상품의 경우는 생산 제품과 동일한 소호(HS 6단위)

의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경우도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제품과 동일한 소호의 비원산지재료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해당 생산품의 원산지 판정은 1차적으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2차적으로 최소허용기준 예외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3. FTA 컨설팅 사례

#### 1) 농산물 및 임산물의 FTA 원산지 판정 사례

07류의 농산물 및 임산물의 경우는 물품, 즉 주원료 그 자체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므로 원재료명세서(BOM) 등 내부자료를 구하는 의미는 없다. 채소류(무우, 고추)와 화훼류(난류, 선인장), 과실류(배, 사과, 감귤, 포도), 버섯류(팽이버섯, 아귀버섯, 새송이), 산림부산물(밤, 표고, 목이버섯) 등은 가공식품이 아니므로, 주원료가 원산지재료일 경우, 포장지나 테이프 등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해도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 라. 규정에 따르면 제0703.10호, 제0703.20호, 제0709.59호, 제0709.60호, 제0710.21호 내지 제0710.80호, 제0711.90호, 제0712.20호, 제0712.39호 내지 제0713.10호, 또는 제0714.20호로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 제7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는 제6.6조 최소허용수준의 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표 III-4〉 농산물(배)의 BOM 사례

대상제품(완제품)				
거래품명	HS 코드			
배	0808.3040			
주요 원자재				
거래품명	HS 코드	조달경로	원산지 지위	원산지 증빙서류
배	0808.30	국내산	원산지	울주군 영농조합
종이박스	4819.10	미상	미상	(주)성우포장
테이프	3919.10	미상	미상	대명상사
노끈	3926.90	미상	미상	북평철물

원산지 판정결과, 07류의 국내산 농산물 및 임산물은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군으로, 주원료인 채소류나 과일류를 국내에서 수확하게 되어야만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게 되며, 비록 포장지 등을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속서 6-가 및 개별원산지기준(PSR)에 따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제품은 국내산 농산물과 임산물로 판정됨을 알 수 있다.

원료 농산물과 임산물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지만,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는 없기 때문에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것과 같다. 즉, 농산물 및 임산물 중 대미 수출에 비교우위가 있는 채소혼합물(0712.9085), 고추(0709.60), 밤(0802.41), 새송이버섯(0709.5990), 팽이버섯(0709.5990), 채소종자(1209.9180) 등은 100% 원산지 재료만 사용해야 하므로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것과 같다.

가공품은 역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어 원료 수입 후 가공하면 원산지 가공품으로 인정되나 국내산 원재료를 반드시 써야 하는 품목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커피원두(0901.21)는 커피생두(0901.11)에서 6단위 세번변경이 되면 국내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며, 밀가루(1101.0000)는 10류 밀에서 11류 밀가루로 2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미국산(제3국산) 밀을 수입 후 밀가루로 가공 후 재수출이 가능하고, 참기름(1515.5000) 역시 12류 참깨에서 15류 참기름으로 2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원료 수입 후 가공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삼엑스(1302.1940)는 원료가 되는 12류 인삼을 국내산을 써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쌀가루(1102) 역시 쌀(1006)을 국내산을 써야 하고, 유자차 등 단일과실조제품(2008.9990)은 20류 주의 규정에 따라 역시 08류 과일을 국내산을 써야 한다. 김치(2005.9997)의 경우도 20류 주의 규정에 따라 07류 채소를 국내산을 써야 한다.

〈표 III-5〉 농·임산물의 한-미 FTA 개별원산지기준(PSR)

구분	물품명	세번	협정세율	PSR	비고
채소류	무우	0706.90	2.7% → 0%	2단위 세번변경 (CC) 완전생산기준 과 유사	한미 FTA 협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6.6조 최소허용수준, 부속서 6-가 부속서 6-나
	고추	0709.60	4.7 ¢/kg → 0%		
	채소혼합물	0712.9085	8.3% → 0%		
	채소종자	1209.9180	15 ¢/kg → 0%		
화훼류	난류	0602.9020	0% → 0%		
	선인장류	0602.9040	3.5% → 0%		
과실류	배	0808.3040	0.3 ¢/kg → 0		
	사과	0808.10	0% → 0%		
	감귤	0805.20	1.9 ¢/kg → 0		
	포도	0806.10	\$1.80/m3 → 0		

구분	물품명	세번	협정세율	PSR	비고
버섯류	팽이/아위 새송이	0709.5990	8.8 ¢ / kg + 20% → 7 ¢ / kg + 16%		
임산물	밤 표고 목이버섯	0802.41 0709.5990	0% → 0% 8.8 ¢ / kg + 20% → 5.2 ¢ / kg + 12%		
커피류	볶은 커피 인스턴트커피	0901.21 2101.1258	30.5 ¢ / kg + 8.5% → 24.4 ¢ / kg + 6.8%	CTSH CC	
곡물류	밀가루	1101.0000	0.7 ¢ / kg → 0%	CC	
인삼가공	인삼엑스	1302.1940	1% → 0%	CC(1211제외)	
식물유지	참기름 기타식물유지	1515.5000 1515.9080	0.68 ¢ / kg → 0% 3.2% → 0%	CC	
과채가공	김치, 채소	2005.9997	11.2% → 0%	CC(07류제외)	
과채가공	유자차 등	2008.9990	6% → 0%	CC(08류제외)	

## 2) 수산물의 FTA 원산지 판정 사례

03류의 수산물의 경우, 부속서 6-나 제6.6조의 예외규정 가호에 따라 03류에 분류되는 원료는 비원산지원료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03류 수출제품의 원재료명세서(BOM) 등 내부자료를 구하는 의미는 없다. 이 경우,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지나 테이프 등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해도 03류 주원료의 원산지(국내산) 지위가 그대로 인정된다.

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 가. 규정에 따르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3류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그 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는 제6.6조 최소허용수준의 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2류의 해조류의 경우도 2단위 CC변경기준이 적용되며 부속서 6-나 제6.6조의 예외규정 카호에 따라 12류 생산품의 6단위 소호와 원료로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6단위 소호가 다르다면 10% 미만의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나, 12류의 분류구조상 주원료의 6단위 소호는 같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주원료는 국내산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국내산으로 인정된다. 포장지나 테이프 등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해도 CC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03류의 명란 젓갈의 경우는 주원료가 국내산인 경우, 염장 등 가공하는 과정에서 비원산지 재료(소금)가 혼합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원료가 비원산지 재료인 경우는 역시 부속서 6-나 제6.6조의 예외규정 가호에 따라 국내산이 될 수 없다.

아래 표는 제20류의 조미김(2008.99) 수출업체로부터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원산지판정을 하기위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한 사례이다.

〈표 III-8〉 수산물 가공품(조미김)의 BOM 사례

거래품명	HS 코드			
조미김	2008.99			
주요성분	HS 코드	조달경로	원산지 지위	원산지 증빙서류
김	1212.20	국내산	원산지	원산지포괄확인서
옥배유/카놀라유	1514.19	수입산	비원산지	수입신고필증
참기름/들기름	1515.50	수입산	비원산지	수입신고필증
식염	2501.00	국내산	원산지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 판정결과, 20류의 조미김은 20류 주의 규정에 따라 그 주된 신선원료가 당사국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주원료인 마른김을 국내산을 사용해야만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게 되며, 비록 참기름 등 부원료를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속서 6-가 및 개별원산지기준(PSR)에 따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제품은 국내산 수산물 가공품임으로 판정됨을 알 수 있다.

03류와 12류의 원료 수산물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지만,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는 없기 때문에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것과 같다. 즉, 수산물 중 대미 수출에 비교우위가 있는 오징어(0307.49), 넙치(0303.31), 젓갈(0303.90), 갑각류(0306.14), 미역(1212.21), 다시마(1212.50), 마른김(1212.2041) 등은 100% 원산지 재료만 사용해야 하므로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것과 같다.

수산물 가공품은 역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어 원료 수입 후 가공하면 원산지 가공품으로 인정되나 국내산 원재료를 반드시 써야 하는 품목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6류의 조제저장처리한 고등어(1604.15), 굴(1605.51), 가공게살(1605.10), 가공젓갈(1605.69)은 제3국에서 수입한 03류의 어류를 16류로 가공하면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미김(2008.9990)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나 20류 주의 규정에 따라 12류

마른김을 반드시 국내산을 사용해야 국내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표 III-7〉 수산물의 한-미 FTA 개별원산지기준(PSR)

구분	물품명	세번	한미 FTA 협정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비고
어류	넙치(냉동)	0303.31	0% → 0%	2단위 세번변경 (CC) 완전생산기준과 유사, 조미김(20류 주 규정)	부속서 6-가 부속서 6-나
	젓갈(명란)	0303.90	0% → 0%		
	갑각류(게살)	0306.14	7.5% → 6%		
	연체동물(오징어)	0307.49	0% → 0%		
	굴(신선)	0307.21	4.7% → 0%		
해조류	미역	1212.21	0% → 0%	2단위 세번변경 (CC)	부속서 6-가 부속서 6-나
	다시마	1212.50	0% → 0%		
	김(마른)	1212.2041	0% → 0%		
	김(조미김)	2008.9990	6% → 0%		
가공 어류	참치(조제저장)	1604.14	6% → 5.4%	CC(03류 제외)	부속서 6-가 부속서 6-나
	고등어(조제저장)	1604.1500	3% → 1%	2단위 세번변경 (CC)	
	굴(조제저장)	1605.5150	4.7% → 3.7%		
	가공게살	1605.10	10% → 3.3%		
	가공젓갈	1605.69	0% → 0%		

### 3) 가공식품 및 축산물의 FTA 원산지 판정 사례

가공식품의 경우는 대부분 2단위 세번변경기준(CC)기준이 적용되며, 따라서 주원료 자체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업체의 원재료명세서(BOM) 등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수출제품의 개별원산지기준(PSR)을 검토한 후 원산지 인정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02류 가공육류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도축공정)이 적용되어 닭고기를 제외하고는 제3국 생축을 수입후 도축한 경우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도축국기준이 적용된다.

20류 과실·견과류 및 채소주스 제품 등(김치, 반찬류)은 20류 주의 규정에 따라 신선 주원료 전부를 당사국 영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원료이외의 부원료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더라도, 2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치 통조림(1604.14)의 경우도 03류의 참치는 국내산을 사용해야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삼엑스(1302.19) 및 인삼음료(2202.90)의 경우 역시, 주원료인 인삼은 국내산을 사용해야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제품의 경우 주원료(12류 인삼, 13류 인삼엑

스)와 완제품의 6단위 소호가 같지 않으므로 10%이하의 미소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1901.90호 및 2106.90호에서 제4류로 변경된 상품도 원산지가 불인정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유아용 조제식료품(1901.10)의 경우에 쌀 및 쌀 조제품 활용시 원산지가 불인정된다.  
 토마토 케첩(2103.20)의 경우에도 조제처리 토마토(2002.90)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상품을 포함하지 않아야 원산지로 인정되며, 아이스크림(2105)은 제0401호 내지 제0405호의 낙농품과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우유고형분을 중량 대비 10% 초과 포함하는 것은 제외된다.  
 설탕이 90% 이상 포함하는 코코아 가루(1806.10)도 제17류의 비원산지 설탕을 포함할 수 없으며, 혼합주스(2009.90)는 3가지 원산지기준(CC, 부가가치 결합기준, CTSH 결합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아래 표는 음료(2202.9090) 수출업체로부터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원산지판정을 하기위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한 사례이다.

<표 III-10> 가공식품(음료)의 BOM 사례

거래품명	HS 코드			
모닝과워	2202.9090			
주요 성분	HS 코드	조달경로	원산지	원산지 증빙서류
복어추출물	1603.00	중국산	비원산지	수입신고필증
식물성원료추출물(헛개나무열매,대추, 감초,건강,천궁,계피,갈근,황기)	1302.19	중국산	비원산지	수입신고필증
액상과당	1702.60	국산	원산지	원산지포괄확인서
정제수	2201.90	국산	원산지	원산지포괄확인서
포도농축액	2106.90	국산	원산지	원산지포괄확인서
구연산	2918.14	중국산	비원산지	수입신고필증
비타민C	2936.27	중국산	비원산지	수입신고필증
식염	2501.00	국산	원산지	원산지포괄확인서
자몽종자추출물	1302.19	국산	원산지	원산지포괄확인서
L-멘톨	2906.11	싱가포르산	비원산지	수입신고필증



최근 대미 수출에 비교우위가 있는 가공식품에는 면류는 라면, 국수, 냉면 등이고, 커피류는 인스턴트 커피 등이고, 소스류는 고추장, 된장, 간장, 기타소스 등이며, 주류는 막걸리, 맥주, 소주 등이고, 음료류는 채소주스, 홍초, 과일주스, 에너지드링크 등이며, 인삼류는 홍삼조제품, 홍삼정, 해조류는 조미김, 기타 켈런, 비스킷, 곡류조제품 등이 해당된다.

이들 가공식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2단위 변경기준(CC) 또는 4단위 변경기준(CTH)이 적용됨을 알 수 있었으며, 예외적으로 신선 주원료를 국내산을 써야 하는 품목들이 섞여 있으니 원산지 판정에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던 20류 제품, 조미김, 참치 통조림, 인삼엑스 인삼음료, 04류, 유아용 조제식료품, 혼합주스, 토마토케첩, 아이스크림은 조건 및 단서를 충족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나머지 가공식품은 2단위(건고추, 밀가루, 곡분, 동식물성 유지, 당류, 인스턴트커피, 간장, 겨자, 소스류, 스프), 4단위(설탕과자), 6단위(볶은 커피, 후춧가루, 초콜릿 및 조제분유) 세번변경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며, 이들 품목군에 해당되는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FTA를 활용한 수출모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을 검토결과 모두 2단위 변경기준(CC)이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원산지 결정기준 검토결과, 도축공정을 불인정하고 있는 다른 FTA와 달리 한미 FTA에서는 도축공정을 불인정공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충분가공으로 인정하고 있다.

축산물은 젤라틴, 발효유, 연유, 축산가공품 등이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군으로 나타났다.

젤라틴(3503.10), 펩톤(3504.00), 동물성유지(1506), 소시지(1601.00), 갈비(0202.20) 등은 주원료를 수입 후 가공하여 CC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품목군을 중심으로 FTA를 활용한 수출모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04류 발효유 및 연유에 우유고형분이 10% 초과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04류, 1901.90, 2106.90)를 사용할 경우 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원료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위의 비원산지 재료가 제1901.10호로 분류된 유아 조제품, 제1901.20호로 분류된 혼합물 및 가루반죽, 제1901.90호 또는 제2106.90호로 분류된 낙농 조제품, 제2105호로 분류된 상품, 제2202.90호로 분류된 우유를 포함한 음료 또는 제2309.90호로 분류된 동물사료에 사용될 경우도 역시 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표 III-9> 가공식품 및 축산품의 한-미 FTA 개별원산지기준(PSR)

구분	물품명	세번	한미 FTA 협정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비고
면류	라면 국수/냉면 파스타	1902.3000 1902.19 1902.3000	6.4% → 0% 6.4% → 0% 6.4% → 0%	2단위(CC) 세변변경	부속서 6-가 부속서 6-나
소스류 수프	고추장/된장 간장 혼합조미료 수프	2103.9090 2103.1000 2103.9080 2104.1000	3.2% → 0% 3.2% → 0% 6.4% → 0% 3.2% → 0%	2단위(CC) 세변변경	
주류 음료 물	막걸리/청주 소주 맥주 음료 물	2206.0045 2208.90 2203.00 2202.9090 2202.1000	3¢/liter → 0% 0% → 0% 0% → 0% 0.2¢/liter → 0 0.2¢/liter → 0	CTH CTH CC CC(제외) CC	
주스류	채소주스 혼합주스	2009.89 2009.90	0.5¢/pf.liter → 0 7.4¢/liter → 4.4¢/liter	CC(완전생산)	
인삼류	홍삼조제품 홍삼정	2106.9007	28.8¢/ kg + 8.5% → 25.9¢/kg + 7.6%	CC (1211제외)	
기타 식품	조제식료품 설탕과자 콘플레이크 초콜릿 퀵런	2106.9099 1704.9035 1904.1000 1806.31 2402.20	6.4% → 0% 5.6% → 0% 1.1% → 0% 5.6% → 3.3% → 1.7c/kg+0.9%	CC(선택) CTH CC CTSH	
곡물 조제품	베이커리반죽 조제식료품 전쌀	1901.2080 1901.9090 1904.9001	8.5% → 5.1% 6.4% → 0% 14% → 8.4%	CC(04류 완전생산기준)	
육류	소갈비 육류조제품	0202.20 1601.00	4% → 0% 0.8¢/kg, 3.4% → 0%	2단위(CC) 세변변경	
유제품	발효유 연유 아이스크림 우유음료 낙농조제품 유아조제품 우유혼합물	0403 0402 2105.0050 2202.90 2106.90 1901.10 1901.20	20% → 12% 3.3¢/kg → 0% 17% → 10.2% 0.2¢/L → 0% 6.4% → 0% 17.5% → 12.5% 8.5% → 5.1%	CC(04류 완전생산기준)	
축산가 공품	젤라틴 펩톤 동물성유지 빈 캡슐	3503.10 3504.00 1506 1905.9090	2.8¢/kg + 3.8% → 0% 5% → 0% 2.3% → 0% 4.5% → 0%	2단위(CC) 세변변경	

## IV. FTA 비즈니스 모델 제안

### 1. 농산물 및 임산물 FTA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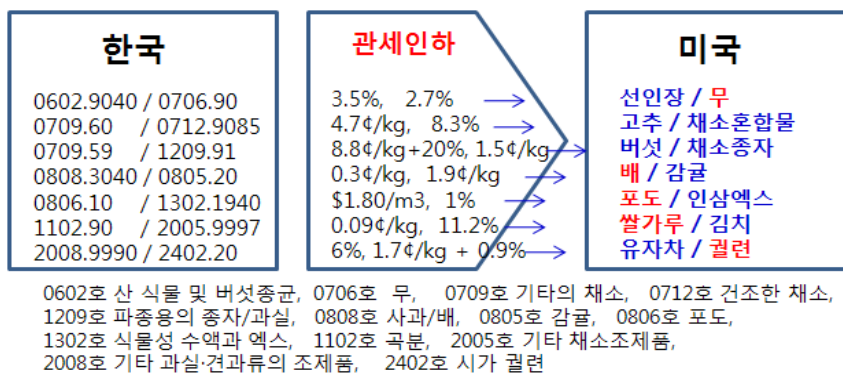
FTA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현재 경계를 넘어서는 기술과 시장을 묶는 매개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sup>4)</sup> 따라서 기업은 한미 FTA를 통해 현재의 기술과 시장 영역을 현저히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영역을 묶어주는 가치창출의 연결전략 즉, 실무적인 매개 모델이 필요한 것이다.<sup>5)</sup>

관세청과 무역협회의 FTA 포털 사이트에는 총 47가지 비즈니스 모델 사례가 구축되어져 있다.

한미 FTA의 특혜관세 혜택이 있는 무, 고추, 선인장류, 배, 감귤, 포도, 버섯류의 경우는 완전생산기준(06류, 07류, 08류, 11류, 12류, 13류, 20류)이 적용되므로 그 기준에 맞게 자율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는 한미 FTA 활용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완전생산기준 FTA 수출모델의 핵심은 한미 FTA의 특혜관세 인하혜택이 얼마만큼 크냐에 달려있다. 특히 버섯류의 경우 8.8¢/kg + 20%의 기본관세가 5년 균등철폐가 되므로 관세인하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 수출액 대비 82%에 달하는 만큼 조기에 본 모델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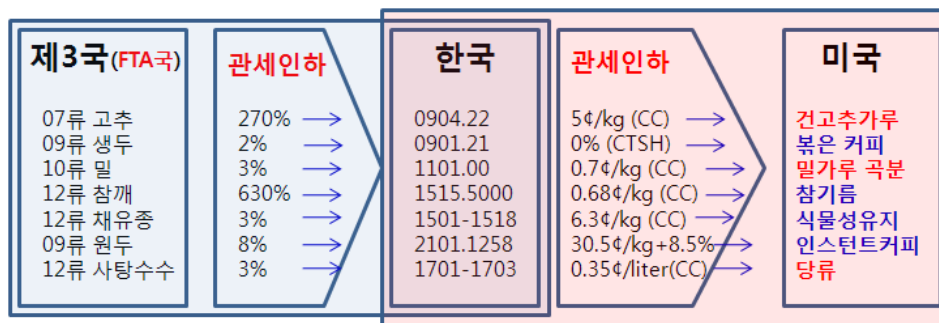
〈그림 IV-1〉 완전생산기준 농산물 FTA 비즈니스 모델



4) Chesbrough, H., & Rosenbloom, R. S. (2002). The role of the business model in capturing value from innovation: evidence from Xerox Corporation's technology spin-off companie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1(3), 529-555.  
 5) A business model describes the rationale of how an organization creates, delivers, and captures value (economic, social, cultural, or other forms of value). The process of business model construction is part of business strategy.

한미 FTA의 특혜관세 혜택이 있는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09류, 11류, 15류, 21류 제품의 경우는 미국에서 원산지재료를 수입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비원산지재료를 수입하여 세번변경기준에 맞게 가공하여 국내산 제품요건을 충족한 후, 자율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는 한미 FTA 활용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IV-2〉 세번변경기준 농산물 FTA 비즈니스 모델



0904호 후추/고추, 0901호 커피, 1101호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515호 기타 식물성 유지  
 1501호 돈지 - 1518호 변성유지/비식용유지, 2101호 커피차·마태의 조제품  
 1701호 사탕수수당 - 1703호 당밀

세번변경기준 농산물 FTA 수출모델은 예를 들면, 미국에서 원두(8% → 6.4%, 5단계 균등 철폐)나 아세안국가로부터 해당제품의 원재료를 수입하게 되면 관세인하 혜택을 수혜 받을 수 있어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되며, 이후 다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인 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맞게 인스턴트 커피로 추가가공을 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공수출모델이다. 건고추가루, 밀가루, 곡분, 참기름 등 식물성 유지, 당류 등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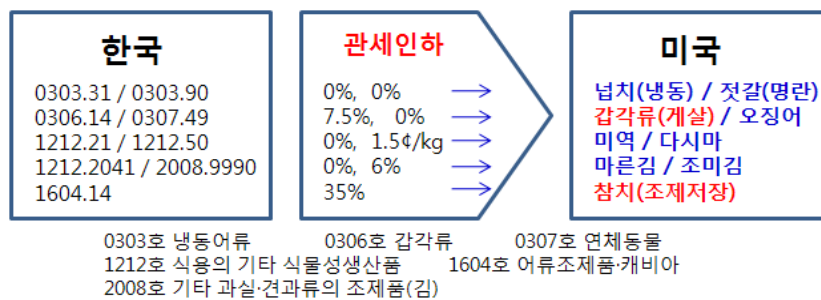
## 2. 수산물 FTA 모델

제품 특성상 주원재료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03류, 12류, 16류 주의 규정에 의해서 국내산 참치를 사용해야 하는 16류 참치 제품, 20류 주의 규정에 의해서 국내산 김을 사용해야 하는 조미김 등에 적용되는 수산물 FTA 수출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전략의 핵심은 얼마만큼 한미 FTA의 특혜관세 혜택이 크냐에 달려있다. 주요수출품목인 냉동 어류의 경우는 미국측 관세율이 0%이지만, 일부 어종과 게살 등 갑각류(7.5% → 6%, 10년 균등철폐), 조미김(6% → 0%), 참치 통조림(6% → 5.4%, 10년 균등철폐)의 경우는 관세인하 혜택이 있으므로 본 전략을 활용할 경우 수출증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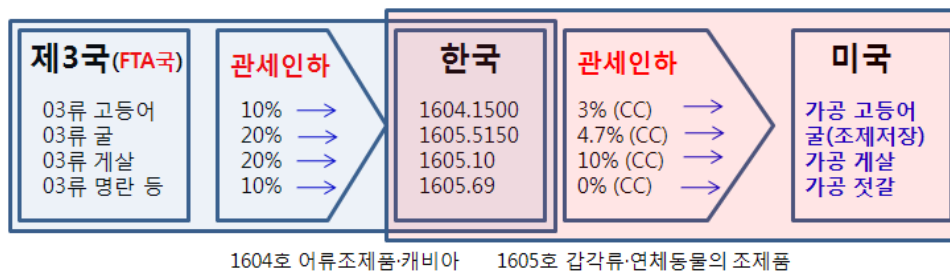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16류 제품, 즉 고등어 통조림(3% → 1%), 굴 통조림(4.7% → 3.7%), 가공게살(10% → 3.3%), 가공젓갈(0% → 0%)의 경우는 미국에서 원산지재료를 수입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비원산지재료를 수입하여 세번변경기준에 맞게 가공하여 국내산 제품요건을 충족한 후, 자율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는 한미 FTA 활용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IV-3〉 완전생산기준 수산물 FTA 비즈니스 모델



제16류 젓갈(오징어, 낙지, 명란, 창란 등) 중 명란 젓갈의 경우는 주원료를 대부분 러시아산 명태에서 추출한다. 따라서 FTA 당사국인 미국(냉동명태 35%→0% 4천 메트릭톤 이하)에서 주원재료를 수입하여 세번변경기준에 맞게 국내산 제품요건을 충족한 후에 수출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원료(소금, 양념, 첨가물)은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하여 혼합할 경우, 관세인하로 인한 원가절감과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을 모두 이룰 수 있다.

〈그림 IV-4〉 세번변경기준 수산물 FTA 비즈니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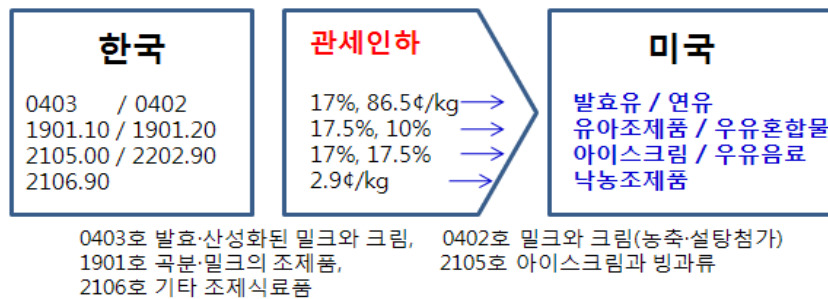


### 3. 축산물 FTA 모델

미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축산물은 젤라틴, 발효유, 연유, 젤라틴, 펩톤, 동물성 유지, 축산 가공품 등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2단위 변경기준(CC)이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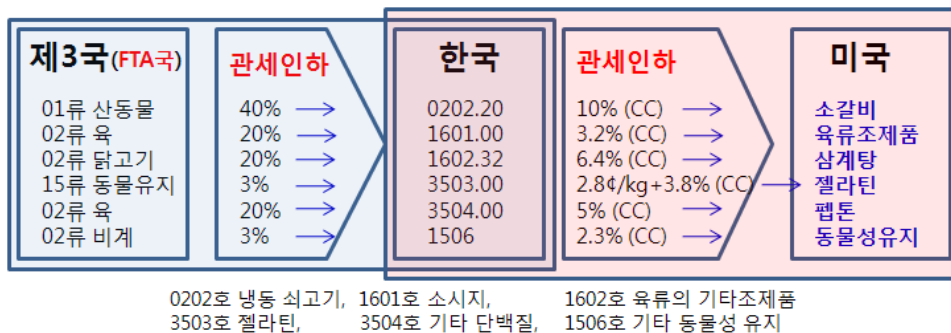
04류 발효유 및 연유 가공시 우유고형분이 10% 초과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1901.90, 2106.90)를 사용할 경우 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위의 04류 및 1901.90호의 비원산지 재료가 제1901.10호로 분류된 유아 조제품, 제1901.20호로 분류된 우유 혼합물 및 가루반죽, 제1901.90호 또는 제2106.90호로 분류된 낙농 조제품, 제2105호로 분류된 아이스크림 상품, 제2202.90호로 분류된 우유를 포함한 음료 또는 제2309.90호로 분류된 동물사료에 사용될 경우도 역시 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림 IV-5〉 완전생산기준 축산물 FTA 비즈니스 모델



젤라틴(3503.10), 펩톤(3504.00), 동물성유지(1506), 소시지(1601.00), 삼계탕(1602.32), 갈비(0202.20) 등은 주원료를 미국이나 제3국으로부터 수입 후 가공하여 CC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를 인정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품목군을 중심으로 FTA를 활용한 수출모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림 IV-6〉 세번변경기준 축산물 FTA 비즈니스 모델



#### 4. 가공식품 FTA 모델

가공식품은 농산물 및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주원료를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중간 가공품을 다시 완성 가공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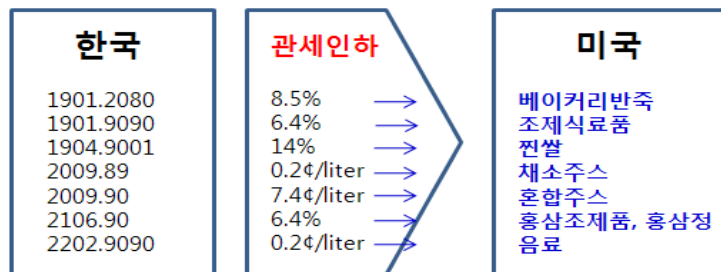
가공식품은 04류 유제품, 09류 커피 향신료, 11류 곡분, 13류 식물성 수액, 15류 유지, 16류 육·어류 조제품, 17류 당류, 18류 코코아, 19류 곡물 조제품, 20류 과채 조제품, 21류 조제식료품, 22류 음료 및 주류, 23류 사료, 24류 담배 등이 해당된다.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농산물 및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을 하였고, 그 외에 19류 베이커리 반죽(8.5% → 5.1%), 조제식료품(6.4% → 0%), 찌쌀(14% → 8.4%) 등과 21류 홍삼조제품(28.8¢/kg + 8.5% → 25.9¢/kg + 7.6%), 22류 음료(0.2¢/liter → 0) 등 주원료를 국내산을 사용하는 완전생산기준 가공식품 FTA 수출모델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04류 내지 24류 가공품 중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가공식품의 경우는 미국에서 원산지재료를 수입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비원산지재료를 수입하여 세번변경기준에 맞게 가공하여 국내산 제품요건을 충족한 후, 수출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FTA 체결국, 즉 면류의 원료가 되는 밀가루, 소스의 원료가 되는 고추나 콩, 주류의 원료가 되는 밀가루나 주정, 굴통조림의 원료가 되는 굴 등을 미국(밀가루 2012년 4.2% → 3.3%, 5단계 균등철폐)이나 아세안국가로부터 해당제품의 원재료를 수입하게 되면 관세인하혜택을 수혜 받을 수 있어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다. 이후 가공을 통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CC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원산지를 인정을 받아 미국으로 수출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품목군을 중심으로 FTA를 활용한 수출모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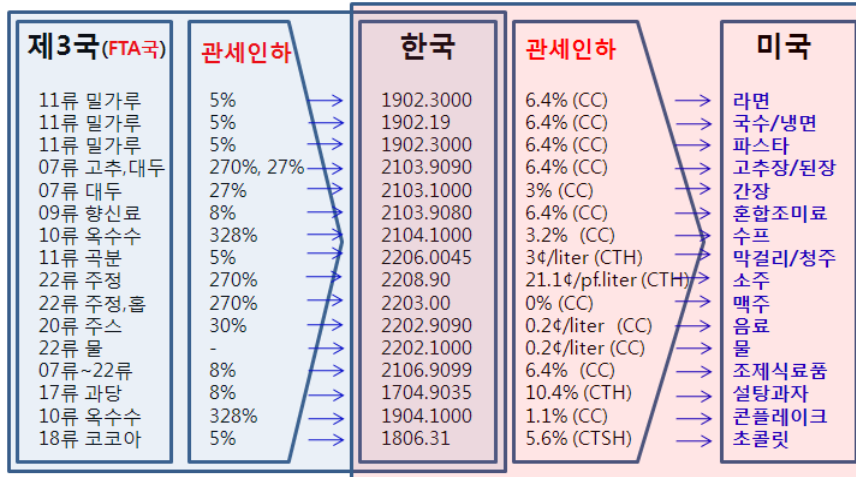
〈그림 IV-7〉 완전생산기준 가공식품 FTA 비즈니스 모델



1901호 곡분/밀크의 조제품, 1904호 콘플레이크/기타가공곡물, 2009호 주스, 2106호 기타 조제식료품, 2202호 음료



〈그림 IV-8〉 세번변경기준 가공식품 FTA 비즈니스 모델



1902호 파스타/면류, 2103호 소스류/혼합조미료, 2104호 수프/브로드, 2206호 기타 발효주  
 2208호 기타 주류, 2203호 맥주, 2202호 음료, 2106호 기타 조제식품, 1704호 설탕과자  
 1904호 콘플레이크/기타가공곡물, 1806호 초콜릿/코코아조제품

세번변경기준 모델이 적용되는 품목에는 라면, 국수 등 면류, 고추장, 된장 등 소스류, 혼합조미료, 수프, 막걸리, 소주, 맥주 등 주류, 음료류, 조제식품, 설탕과자, 콘플레이크, 초콜릿 등이 해당되며 이들이 속한 HS 4단위 호의 제품도 모두 해당된다.

###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 대미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에 알맞은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대미 수출 식품산업의 수출입동향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2012년 대미 수출액 통계를 근거로 농산물 및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의 비교우위 품목군을 도출한 후, 주요수출 품목군의 대표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FTA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였다.

제4장에서는 4가지 주요품목군의 FTA 활용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및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은 국내산 주원료를 가공하여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완전생산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은 주원료를 제3국(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관세인하(원가절감) 혜택을 받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공한 한 후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세번변경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및 임산물의 경우, 무우, 고추, 채소혼합물, 채소종자, 선인장, 배, 감귤, 포도, 버섯, 인삼엑스, 쌀가루, 김치, 유자차 등 완전생산기준(06류, 07류, 08류, 11류, 12류, 13류, 20류)이 적용되는 품목은 국내산 주원료를 제품화하여 원산지를 부여 받은 다음 미국으로 수출하여 관세를 인하 받는 완전생산기준 FTA 수출모델을 활용해야 한다.

건고추가루, 볶은커피, 밀가루, 참기름, 식물성유지, 인스턴트커피 등 세번변경기준(09류, 11류, 15류, 21류)이 적용되는 품목은 미국에서 원산지재료를 수입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비원산지재료(07류 고추, 09류 생두, 11류 밀, 12류 참깨, 12류 채유종, 09류 원두)를 수입하여 세번변경기준에 맞게 가공한 국내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여 관세를 인하 받는 세번변경기준 FTA 수출모델을 활용해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 넙치(냉동), 젓갈(명란), 갑각류(게살), 연체동물(오징어), 미역, 다시마, 김(마른), 김(조미김), 참치(조제저장) 등 주원재료에 대한 완전생산기준(03류, 12류, 20류)이 적용되는 품목은 국내산 주원료를 제품화 및 가공하여 원산지를 부여 받은 다음 미국으로 수출하여 관세를 인하 받는 완전생산기준 FTA 수출모델을 활용해야 한다.

고등어(조제저장), 굴(조제저장), 가공게살, 가공젓갈 등 세번변경기준(16류)이 적용되는 품목은 미국에서 원산지재료를 수입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비원산지재료(03류)를 수입하여 세번변경기준에 맞게 가공한 국내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여 관세를 인하 받는 세번변경기준 FTA 수출모델을 활용해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발효유, 연유, 아이스크림, 우유음료, 낙농조제품, 유아조제품, 우유혼합물 등 주원재료에 대한 완전생산기준(04류, 21류, 22류, 19류)이 적용되는 품목은 국내산 주원료를 제품화 및 가공하여 원산지를 부여 받은 다음 미국으로 수출하여 관세를 인하 받는 완전생산기준 FTA 수출모델을 활용해야 한다.

소갈비, 육류조제품, 삼계탕, 젤라틴, 펩톤, 동물성유지 등 세번변경기준(02류, 16류, 35류, 15류)이 적용되는 품목은 미국에서 원산지재료를 수입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비원산지재료(01류, 02류, 15류)를 수입하여 세번변경기준에 맞게 가공한 국내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여 관세를 인하 받는 세번변경기준 FTA 수출모델을 활용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베이커리반죽, 조제식료품, 찐쌀, 채소주스, 혼합주스, 홍삼조제품, 홍삼정음료 등 주원재료에 대한 완전생산기준(19류, 20류, 21류, 22류)이 적용되는 품목은 국내산

주원료를 제품화 및 가공하여 원산지를 부여 받은 다음 미국으로 수출하여 관세를 인하 받는 완전생산기준 FTA 수출모델을 활용해야 한다.

라면, 국수/냉면, 파스타, 고추장/된장, 간장, 혼합조미료, 수프, 막걸리/청주, 소주, 맥주, 음료, 물, 조제식료품, 설탕과자, 콘플레이크, 초콜릿 등 세번변경기준(19류, 21류, 22류, 17류, 18류)이 적용되는 품목은 미국에서 원산지재료를 수입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비원산지재료(11류, 07류, 09류, 10류, 11류, 22류, 20류, 17류, 18류)를 수입하여 세번변경기준에 맞게 가공한 국내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여 관세를 인하 받는 세번변경기준 FTA 수출모델을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식품산업의 비교우위 전 품목군별로 수출업체를 모두 컨설팅 한 것은 아니고, 대표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BOM을 확보한 것인 만큼 표본추출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향후 기 발효된 모든 FTA를 대상으로 HS 4단위 기준별 수출 모델을 제안하는 보다 정교한 후속 연구를 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지식경제부 및 한국무역협회,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 원산지 길잡이, 2009.11.
- 한국무역협회, 농수산식품산업 한-미 FTA 검증 대응 전략, 2013, 3, pp.06-36.
- 농수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3.3
- 김광열,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활용전략 및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8.
- 김중근, “FTA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011,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제7권 제3호, p.299.
- 김태인·이제홍,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의 FTA 비즈니스 모델 연구”, pp.88-110, 관세학회지 제14권 1호, 2013.2
- 김태인·이준건, “강원도의 산업별 FTA Business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pp.545-569, 무역연구 제9권 1호, 2013.3
- 김태인·김중근, “한-EU FTA 부가가치기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사례연구”, pp.1-25, 무역연구 제8권 1호, 2012.3
- 김태인, “한-EU FTA의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사례연구”, pp.1-28, 무역연구 제7권 4호,

2011.12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연구보고서 08-09, pp.115-1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김한성,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제09-04호, 2009

김한성 외 4인, “국내기업의 한·EU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연구”, 대외정책연구원, 2009.11. pp.93-94, p.116

노덕률,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 스파게티보울(Spaghetti bowl) 현상의 결정요인”, 관세학회지 제11권 제2호 P.2

남풍우,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검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3호, 2010

박지애 · 손찬현, “강원도 주요 수출품의 국제경쟁력 분석”, 무역연구 제7권 제4호, 2011.12.

이성임, “FTA 원산지규정을 활용한 수출 전략 : 원산지 결정기준 활용 모델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국제통상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2.

이정용 · 이정희, “섬유의류부문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한-미 FTA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10권 제4호, 2009

유광현 · 김형철 · 신성식, “한-미FTA 원산지검증 절차를 위한 관세특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1호, 2011. 2

최영훈, “우리나라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운영실태와 향후 개선방안” 한국관세포럼 제11권, 201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FTA 이행 및 활용방안 간담회 발표자료, 2008년 8월 22일

한-미 FTA 협정문 및 원산지규정

청아굿푸드, 푸른솔식품, 청아굿푸드, 엔초이스, 정이푸드빌 등 FTA 컨설팅 자료 : 원산지 (포괄)확인서, 소요부품(자재) 명세서(Bill of Materials)와 제조공정도 등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이트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관세청 무역통계 사이트

무역협회 FTA 포털 사이트

Business Model Generation, A. Osterwalder, Yves Pigneur, Alan Smith, and 470 practitioners from

45 countries, self published, 2010

chesbrough, H., & Rosenbloom, R. S. (2002). The role of the business model in capturing value from innovation: evidence from Xerox Coproration's technology spin-off companie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1(3), 529-555.

## ABSTRACT

### A Study on the Building of Korea-USA FTA Business Model for Food Industries in Korea

Tae-In Kim\*

This study wished to construct and propose correct Korea-USA FTA business model in Food Industry for FTA practical use maximization.

First, the application item of Wholly Obtained Criterion may have to construct Wholly Obtained Criterion FTA practical use strategy. This strategy is to export to FTA country concerned after process domestically made main material.

Second, the application item of Change in Tariff Heading may have to construct Change in Tariff Heading FTA practical use strategy. This strategy exports to FTA country concerned after that process that receives tariff cut(Cost reduction) benefit, and satisfies Change in Tariff Heading importing main material from third country (The FTA conclusion country).

**Key Words** : FTA, Business Model, Food Industry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 Business, Kangwon National University